

어린이집 고용장려금 정부보조금(기관보육료) 지원에 따른 사업주 확인서

회신: 부산고용센터 기업지원과 팩스 051-719-4508

※아래내용에 허위답변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■ 어린이집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자 명단(해당사항에 표시)

| 시설구분 | 지원대상자 성명 | 직책 (반구분) * 반드시 기재 | 월임금 | 정부 또는 지자체 기관보육료 (인건비 지출비율에 따른 지원금액) | 비고 (해당반 원생수/담임 교사 수)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예시) 민간어린이집 | 홍길동 | 예시)보육교사 (1세반) | 2,000,000원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 (금액: 1,500,000 원)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 | 3명/2명 |
| | | | |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 (금액: 원)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 | |
| | | | |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 (금액: 원)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 | |
| | | | |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 (금액: 원)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 | |
| | | | |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 (금액: 원)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 | |
| | | | |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 (금액: 원)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 | |

상기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사실과 다를 시 지원된 지원금의 반환조치 및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 추가징수, 1년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

사업장명:

확인자(대표):

(인)

※참조)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(대체인력 지원금) 지원대상이 되는 어린이집 지원 국고보조금 범위

I. 국공립, 사회복지법인, 법인·단체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비율(영아반80%, 유아반30%) 공제

II.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(중소기업120만원, 대기업60만원) 공제

III. 민간·가정·협동 어린이집(영아반의 경우) 해당 반의 기관보육료 62.9% 공제

그 외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유아반 보육교사, 조리원, 사무원, 운전원 등 인력은 법령에 따른 기준으로 동일 지원

▷ 민간·가정·협동 어린이집은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시 월별 총계정 원장* 등 증빙자료를 제출

*지자체 보육 통합 정보시스템 > 표준회계관리시스템 > 회계상세정보에서 출력

※ 보건복지부 '18년 인건비 표준 보육비용 계측결과 민간어린이집 영아반 기관보육료 수입중 62.9%가 인건비에 해당

※ 보건복지부의 표준비용 계측에 대한 조항이 신설(영유아보호법 및 동법 시행규칙)됨에 따라 표준보육비용에 대외적 구속력 발생